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8694-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88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도 부산항 북항 및 신항 유지준설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준설공사)
- 공사위치
 - 북항(여객부두 등) 및 신항(6부두 인근) 준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이 공사의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공사내용 : 준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 695,000,000원
 - 추정가격 631,818,182원 + 부가세 63,181,818원
- 기초금액 : 695,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5개사 이하) 방식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 동 공사는 단일공종으로 해상 준설선 운용이 필수적이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은 제한

3.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와 물량 내역서는 인프라관리부(☎ 051-999-324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공동 계약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을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6. 09.08, 18:00**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공사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09. 04, 00:00 ~ 09. 09, 10:00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 09. 09, 11:00
 -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07.01.시행)을 준용,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자동선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산식 중 A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 28,922,490원 (공고문 10. 세부내역 참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산식 중 순공사원가(600,230,909원)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07.01.시행) 제2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3]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수중·준설공사업(100%)』 ”입니다.
- 시공경험평가는 동 기준 중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만 개별통보 하며, 심사제외 업체는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을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8,148,126	국민건강보험료	6,166,845
퇴직공제부금	3,945,40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10,3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851,788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12.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붙임3】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증빙문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70점 이상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관련 문의 : 인프라관리부 감독 (☎ 051-999-3239)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부산항만공사 계약지침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원재료 중 그 비용이 계약금액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계약기간 90일 이내,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발주처)과 수탁기업(중소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4. 전자계약서 인지세 등 안내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보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에서 업체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100% 부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 계약 이행보증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공사입니다.
 - 부산항만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 낙찰을 받은 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착공계 제출, 문서제출,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20.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을 받은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21.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시 발생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간접구매 이행 시 매월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내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 계약예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부산항만공사 계약지침,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 051-999-3038), 설계 및 산출내역은 인프라관리부(☎ 051-999-32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첨부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 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주)00000 대 표 0 0 0 (서명 또는 날인)

【첨부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000 회사 대표 000 (서명 또는 날인)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첨부3】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평가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평가표

☐ 평가대상

사업자명	○ ○ ○ ○	사업주	○ ○ ○ ○
------	---------	-----	---------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순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평가점수	
1	안전경영 의지	·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등	10	15
2	안전보건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의 적절성	10	10
3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15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10	15
5	중점 위험관리	· 중점 위험요인 선정과 관리방안의 적절성	10	15
6	비상연락체계	· 산업재해 발생 위험 대비 비상연락체계 확립 상태	10	15
7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현황, 동종업종 대비 재해발생 정도	10	15
8	가·감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공단 우수사업장 인정 여부 · 제5조의2에 따른 재평가 결과	-	+ 10 -
합 계			70	100

☐ 평가결과 : ☒적정 / ☐부적정

보완조치 요구사항	○ ○ ○ ○
-----------	---------

☐ 평가결과 별 조치기준

득점	조 치 내 용
70점 이상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부 내용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음)
70점 미만	① 계약체결 전 , 사업주(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교육(노동부 지정기관, 안전보건공단, 부산항만공사 등) 이수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부산항만공사 사업감독자 확인 후 사업착수(착공)

2026. 00. 00.(월)

(평가자) 부산항만공사 ○ ○ ○ 차장(인), ○ ○ ○ 대리(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 양식은 적격심사 요청시, 송부

순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경영 의지	• 안전보건경영방침, 사업주(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실적 등	15	10	5

- 우수 : ❶ 안전보건경영방침에서 사업주의 안전경영에 관한 의지(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경영방침[예시 등]을 활용하지 않고 해당 회사만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마련한 경우)가 확인됨. 또는 ❷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주 안전보건활동에서 안전경영에 관한 의지와 관심(평가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안전 관련 사외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거나 그 밖에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 참고)이 확인됨
- 보통 :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미흡 :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지 않음

순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우수	보통	미흡
2	안전보건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의 적절성	10	6	3

- 우수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임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시 우수로 간주
- 보통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역할과 책임이 일부 누락됨
- 미흡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순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우수	보통	미흡
3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5	10	5

-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누락없이* 검토되고 수립됨
* ❶ 채용 시, ❷ 정기, ❸ 작업내용 변경 시, ❹ 특별, ❺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검토
-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교육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어 수립됨
-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순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15	10	5

- 우수 : 위험성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위험성평가 계획이 누락없이 작성됨
- 보통 : 위험성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위험성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세부 실행계획 등 일부 작성이 누락됨
- 미흡 : 위험성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험성평가 계획이 미수립 됨

순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우수	보통	미흡
5	중점 위험관리	• 중점 위험요인 선정과 관리방안의 적절성	15	10	5

- 우수 : 해당 작업에 맞는 **중점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함
- 보통 : 중점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해당 작업의 중점 위험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을 도출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관리방안을 제시함
- 미흡 : 중점 위험요인과 관리방안을 선정하지 않음
 - * (중점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Top 5 선정 (유지·보수공사, 시설관리 등), Top 3 선정 (기타 위험요인이 적은 계약)

순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우수	보통	미흡
6	비상연락체계	• 산업재해 발생 위험 대비 비상연락체계 확립 상태	15	10	5

- 우수 : **업무관계자와 관계기관이 모두 포함**된 비상연락체계를 마련됨
- 보통 :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업무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중 **일부만 포함**됨
- 미흡 : 비상연락체계가 마련되지 않음

순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우수	보통	미흡
7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현황, 동종업종 대비 재해발생 정도	15	10	5

-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보통 :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유지
- 미흡 :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후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최근 2년간) 각 1부씩 제출
 - ** 평가일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최근 2년의 자료 제출
 - ❶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❷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확인서 : <https://certi.kosha.or.kr>

순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가점
8	인증 및 우수기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ISO-45001) • 안전보건공단 인정 : 최근 3년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상생협력사업 등	+10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노동부 지정기관, 안전보건공단*,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 등 관련교육 이수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edu.kosha.or.kr>)

- 안전보건공단교육 → 교육신청 → 교육기관별 교육신청
- 공단 본부 / 교육원 → 인터넷교육 → “교육대상 : 근로자” 검색
- (추천과목 : 무료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공통),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해, 안전보건기본교육(건설, 서비스업, 제조)

The image displays two screenshots of the 'Industrial Safety Portal Education System' website.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main menu with 'Education Application' highlighted, and arrows pointing to the 'Education Application' link in the left sidebar and the 'Education Application' button in the main content area. The bottom screenshot shows the 'Education Application' form with arrows pointing to the 'Institution' dropdown (set to 'Public Institution / Education Center'), the 'Education Target' dropdown (set to 'Worker'), and the 'Search' button.